|  |  |  |
| --- | --- | --- |
| **제 · 개정 이력표** | | |
| **개정**  **번호** | **제·개정　일자** | **개  정  내  역** |
| 00 | 96.10.01 | 최초 제정 |
| 01 | 14.01.01 | 부분 개정 |
| 02 | 15.03.03 | 부분 개정 |
| 03 | 16.06.01 | 부분 개정 |
| 04 | 22.11.30 | 부분 개정 |
| 05 | 23.04.19 | 부분 개정 |
| 06 | 24.03.26 | 부분 개정 |
|  |  |  |

**- 목 차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제 2 조 적용범위**

**제 3 조 권한**

**제 2 장 구 성**

**제 4 조 구 성**

**제 5 조 의 장**

**제 3 장 회 의**

**제 6 조 종 류**

**제 7 조 소집권자**

**제 8 조 소집절차**

**제 9 조 결의방법**

**제 10 조 부의사항**

**제 11 조 지주회사와의 협의**

**제 12 조 이사회 내 위원회**

**제 13 조 감사의 출석**

**제 13 조의 2 관계인의 출석**

**제 14 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제 15 조 의사록**

**제 16 조 간 사**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이사회의 조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권한]**

1.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회는 이사 및 기타 임원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 2 장  구   성**

**제4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5조 [의장]**

1. 이사회의 의장은 등기이사 중 한 명을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이사회 의장이 유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 의장이 이사 중 사전에 지정한 자, 이사인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6조 [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 [소집권자]**

1. 이사회는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 의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각 이사 또는 감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회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소집절차]**

1.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

지 회의를 열수 있다.

**제9조 [결의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1.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

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부의사항]**

1.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의 소집

나. 영업보고서의 승인

다.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

다.)

라. 정관의 변경

마. 자본의 감소

바.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사.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

약

자.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차.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카. 현금ㆍ주식ㆍ현물배당 결정(정관에 의해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파. 이사, 감사의 보수

하.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거. 법정준비금의 감액

너.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가.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나. 연간∙중장기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다.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라.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 개발

마.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바.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

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아.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자.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차.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카. 이사회규정 제정∙개정

3. 재무에 관한 사항

가. 투자에 관한 사항

나. 중요한 계약의 체결

다.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라. 결손의 처분

마. 신주의 발행

바.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사. 준비금의 자본전입

아. 전환사채의 발행

자. 신주인수권부사체의 발행

차.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카.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타.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파. 자기주식의 소각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나.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다.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 타

가. 중요한 소송의 제기

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다.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월별 경영실적에 관한 사항

2. 주요 임원 인사 및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3. 중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외부감사인 선임

5.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6.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

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7.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8. 주요 경영상 일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11조 [지주회사와의 협의]**

1. 대표이사는 제10조(부의사항)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이사회 부의 전에 주식

회사 종근당 홀딩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10조(부의사항) 중 [별첨:세부규칙]의 사항은 이사회 부의 전

에 주식회사 종근당 홀딩스에 협의하여야 한다(※ [별첨:세부규칙] 참고).

1. 영업 및 생산활동에 관한 사항

2. 재무구조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에 관한 사항

3. 중요 계약에 관한 사항

4. 기타주요경영사항

**제12조 [이사회 내 위원회]**

1.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1.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3조 [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의2 [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6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

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

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6조 [간사]**

1.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2.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5년 3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2년 11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3년 4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4년 3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